

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75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5. 10. 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

2. 법적근거

지방세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)

3. 주요골자

농의소독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"5년간" 경감하던것을 "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"으로 하고, 아파트형 공장 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한다. (안 제13조)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) 제1항 중 "5년간" 을 "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" 으로 하고 제1항 단서 중 "그러하지 아니하다." 를 "그러하지 아니하며,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" 로 하며, 제1항 제4호중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" 를 "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(분양·임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)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